
문서번호 : 16-04-사무-04
수 신 : 각 언론사 제위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담당 송아람 변호사)
제 목 : [보도자료] 법원,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금지통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각하판결 선고
전송일자 : 2016. 4. 12.(화)
전송매수 : 총 2매

[보도자료]

경찰의 '묻지마 금지통고'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금지통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각하판결 선고 -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찰은 지난 2015년 11월 30일, 이른바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하여 불법 폭력 시위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통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모임은 '백남기 농민궐기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대책위)'를 대리하여 12월 1일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중 집행정지신청이 12월 3일 법원에 의하여 인용되어 2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3.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는 2016년 4월 8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금지통고 취소소송의 판결을 선고하며, 위 대회가 경찰의 금지통고처분사유인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금지통고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대회가 이미 개최되었으므로 금지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며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4. 이번 판결은 지난 집행정지 결정에 이어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경찰의 금

지통고가 실질적으로 위법했음을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금지통고처분의 적법성을 강변하면서 원고들이 12.5 평화집회이후 위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였음에도, 이에 부동의한 채 위 소송을 유지했다가 오히려 피고 패소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이번 판결 선고로 경찰은 무리한 금지통고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 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 책임까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5. 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입니다.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의적으로 금지통고를 남용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여 왔습니다. 우리 모임은 이번 판결로 경찰이 자신의 권한남용을 반성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자신들의 의무를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4.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